

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3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<u>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. 다만, 구 지역에 사</u>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50명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</u>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
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로 한정 한다.

3. 그 밖에 재정,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

<신 설>

④ (생략)

⑤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예산부서의 공무원이 된다.

3. -----

사람

④ 위원회는 지역별,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,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-----

-- 주민참여예산 담당 과장---

3. -----

--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
④ -----

----- 보장하여야 한다..

⑤ (개정안과 같음)

⑥ (개정안과 같음)